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73호
2018. 10. 1.(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조 례(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296호)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97호)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298호)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299호)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00호)30

규 칙(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규칙 제860호)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61호)58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32호)63

공 고(1)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 공고(공고 제2018-743호)75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9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에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 둔다.

제7조(분장사무)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복합문화센터)

제1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에 둔다.

제12조(센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개발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과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

를 따로 정한다.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실·과장”을 “국장, 실·단·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평생학습원장”을 “복합문화센터장”으로 하고, 일련번호란 2호와 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실·국”을 각각 “실·단·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관광축제담당”을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문화담당주사”를 “문화예술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새로운대덕추진단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평생학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하고, “평생학습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복합문화센터장”으로,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중 “원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원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관장명의 중 “평생학습원장”을 각각 “복합문화센터장”으로, “평생학습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도서관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재무담당 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재무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구분란 중 “실·과장실”을 “실·단·과장실”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6~p.19)

[별표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주 소	관 할 구 역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건강생활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5층 (법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87, 3층 (법동)	대덕구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장동보건진료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디로15번길 63 (장동)	장동 일원

※ 장동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법정동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 계획에 따른 기구의 설치·변경·폐지에 대한 정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장 및 실·단·과장의 직급 등을 정함(제2조).
- 실·단·국 설치 내역을 정함(제3조).
-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를 별표로 정함(제7조).
- 직속기관 보건소 설치 관련 항목에서 보건지소 삭제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가, 소장 등과 소관 사무를 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평생학습원이 복합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센터장의 역할과 소관 사무를 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하부행정기관(동)의 설치와 직무 및 동장의 역할을 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9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7명”을 “6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
명”을 “674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2% 이내	30% 이내	7%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50%	50%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총 계				689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686					
	3급			1	1				
	4급			4	3		1		
	5급			40	21	3	3	1	12
	6급 이하			641					
별정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7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 에서 “689명” 으로 1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 에서 “674명” 으로 조정함(제2조).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2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9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

일부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
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기존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감면·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함(제1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함(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보완함(제3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징 근거 추가 및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제4조).
-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9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

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목적조항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정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제3조).
-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해 정함(제6조).
-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함(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0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사업 홍보계획

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유관기관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수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최종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 타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소화기(개) <input type="checkbox"/> 단독경보형감지기(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
-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7조에서 제8조까지).
- 관련 행정기관간의 통보사항을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 국장과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
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직급과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실·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평가실) ① 감사평가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평가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새로운대덕추진단)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공동체과장·문화체육과장·회계정보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에너지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분장사무) 실·단·과장은 별표 1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복합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복합문화센터에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및 송촌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4조(분장사무) 센터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분장사무) 동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은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자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1조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대덕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3. 회계정보과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계정보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평가실

제16조제1호다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계정보과

제1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수자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장·국장·과장”을 “실장·단장·국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행정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담당자	담당	과 장	결 재
				전결			
당 직 자	·사령 : 직 성명 ①인		①인	기 관 별 당 직 사 항			
	·반장 : 직 성명 ①인			기 관 명	당 직 자 (재택근무자)	당 직 신고시간	
특 이 사 항				오 정 동			
				대 화 동			
				회 덕 동			
				비 래 동			
				송 촌 동			
당직자 보안점검 실시결과				중 리 동			
부 서 별	이상유무	부 서 별	이상유무	법 1 동			
기획홍보실	유·무	여성가족과		법 2 동			
감사평가실	유·무	위 생 과		신 탄 진 동			
새로운대덕추진단	유·무	도시재생과	유·무	석 봉 동			
총 무 과	유·무	안전총괄과	유·무	덕 암 동			
교육공동체과	유·무	공원녹지과	유·무	목 상 동			
문화체육과	유·무	건 축 과	유·무	보 건 소			
회계정보과	유·무	건 설 과	유·무	복합문화센터			
세 무 과	유·무	교 통 과	유·무	신탄진도서관			
민원지적과	유·무	의 회 사 무 과	유·무	안 산 도 서 관			
에너지경제과	유·무	기 타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체육회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후별관 등)	유·무	송 촌 도 서 관			
기후환경과	유·무			대덕문화체육관			
복지정책과	유·무			대 청 공 원			
사회복지과	유·무						
※ 당직자 보안점검 : 화재예방, 시건장치 잠금상태, 문서 보안상태 등							
C C T V 관 찰 사 항							
관 찰 시 간	이상유무	조 치 결 과				점 검 자	
: ~ :							
: ~ :							
: ~ :							
: ~ :							

열쇠관리대장

구 분	년 월 일 보 관 자		년 월 일 지 출 자	
	시 간	성 명	시 간	성 명
구 청 장 실				
부 구 청 장 실				
자 치 행 정 국 장 실				
경 제 복 지 국 장 실				
안 전 도 시 국 장 실				
기 획 홍 보 실				
감 사 평 가 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교 육 공 동 체 과				
문 화 체 육 과				
회 계 정 보 과				
세 무 과				
민 원 지 적 과				
에 너 지 경 제 과				
기 후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위 생 과				
도 시 재 생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의 회 사 무 과				
자 원 봉 사 센터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재무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5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하단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단·과는 관서의 실·단·과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마목·사목 및 자목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재무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 중 “평생학습도서관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국장”을 각각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평생학습도서관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

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과 회계정보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

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93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1-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중 “국 과”를 “실·단·국 과”로, “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서명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환경과”는 “기후환경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보내는 사람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뒷면 문의 및 불편신고란 중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청소위생과”를 각각 “기후환경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과장”을 “기획홍보실장, 회계
정보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2의 1. 승용차량 기준정수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중 “평생학습
원”을 “복합문화센터”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분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25 ~ p.40)

[별표 2]

보건행정과장의 분장사무 (제11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1 ~ p.42)

[별표 3]

복합문화센터장 및 도서관장의 분장사무 (제1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3)

[별표 4]

동장의 직급 (제15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4)

[별표 5]

동장의 분장사무 (제16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 본청 국장 및 실·단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각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정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획홍보실장, 감사평가실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직급을 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자치행정국장 및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
- 경제복지국장 및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7조).
-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8조).
- 본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를 별표로 정함(제9조).
- 보건소장 직급을 정함(제10조).
- 하부조직을 정하고 보건행정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정함(제11조).
- 사업소장 직급, 하부조직의 설치 및 관장의 직급을 정함(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정함(제14조).
- 동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정함(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8~p.1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정원 조정 내용 : 정원의 총수 689명(증 12명)

2) 일반직 증·감 내역

▶ **5급 : 38명 → 40명 (증 2명)**

- 본청 18명 → 21명(증 3명)
- 행정 5명 → 7명(증 2명) / 부서 신설
- 행정·시설 4명 → 5명(증 1명) / 부서 신설
- 행정·보건 0명 → 1명(증 1명)
- 행정·환경·보건 1명 → 0명(감 1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4명 → 3명(감 1명)
- 의무 3명 → 2명(감 1명) / 보건지소 폐지
 - 사업소 1명 → 1명(변동없음)
 - 동 12명 → 12명(변동없음)

▶ **6급 : 150명 → 150명 / 변동없음**

- 본청 116명 → 114명(감 2명)
- 행정 58명 → 52명(감 6명)
- 사회복지 4명 → 2명(감 2명)
- 공업 1명 → 2명(증 1명)
- 행정·사회복지 3명 → 4명(증 1명)
- 행정·사서 0명 → 1명(증 1명)
- 행정·녹지 2명 → 3명(증 1명)
- 행정·보건 2명 → 3명(증 1명)
- 공업·녹지 1명 → 0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공업·환경·녹지·보건 0명 → 2명(증 2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8명 → 8명(변동없음)
 - 행정 0명 → 1명(증 1명)
 - 행정·보건 1명 → 0명(감 1명)
 - 사업소 5명 → 5명(변동없음)
 - 동 18명 → 20명(증 2명)
 - 행정·사회복지 6명 → 8명(증 2명)

- ▶ 7급 : 215명 → 214명 (감 1명)
 - 본청 136명 → 134명(감 2명)
 - 행정 51명 → 52명(증 1명)
 - 사회복지 13명 → 11명(감 2명)
 - 행정·사회복지 0명 → 1명(증1명)
 - 운전 4명 → 3명(감 1명)
 - 사무운영 1명 → 0명(감 1명)
 - 의회사무과 6명 → 6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15명 → 15명(변동없음)
 - 사업소 12명 → 11명(감 1명)
 - 행정 12명 → 11명(감 1명)
 - 동 46명 → 48명(증 2명)
 - 행정 33명 → 32명(감 1명)
 - 사회복지 13명 → 15명(증 2명)
 - 사무운영 0명 → 1명(증 1명)
- ▶ 8급 : 196명 → 196명 (변동없음)
 - 본청 124명 → 123명(감 1명)
 - 행정 34명 → 31명(감 3명)
 - 사회복지 12명 → 13명(증 1명)
 - 공업 8명 → 7명(감 1명)
 - 행정·사회복지 1명 → 2명(증 1명)
 - 행정·시설 2명 → 4명(증 2명)
 - 행정·보건 2명 → 1명(감 1명)
 - 의회사무과 3명 → 3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15명 → 16명(증 1명)
 - 간호 7명 → 8명(증 1명)
 - 사업소 9명 → 10명(증 1명)
 - 행정·사서 1명 → 2명(증 1명)
 - 동 45명 → 44명(감 1명)
 - 사회복지 14명 → 13명(감 1명)
- ▶ 9급 : 71명 → 81명 (증 10명)
 - 본청 40명 → 49명(증 9명)
 - 행정 5명 → 8명(증 3명)
 - 세무 3명 → 2명(감 1명)
 - 사회복지 10명 → 14명(증 4명)
 - 시설 2명 → 5명(증 3명)
 - 행정·시설 1명 → 2명(증 1명)

- 사무운영 2명 → 1명(감 1명)
 - 의회사무과 0명 → 0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2명 → 3명(증 1명)
 - 행정 0명 → 1명(증 1명)
 - 사업소 6명 → 4명(감 2명)
 - 방호 1명 → 0명(감 1명)
 - 사무운영 3명 → 2명(감 1명)
 - 동 23명 → 25명(증 2명)
 - 행정 13명 → 11명(감 2명)
 - 사회복지 8명 → 10명(증 2명)
 - 사무운영 2명 → 4명(증 2명)
- 3) 별정직 증·감 내역 : 7급 상당 1명 증원(비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위생과”를 “기후환경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7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공무원 등의 정수표(제7조 관련)

(단위:명)

부서별 직종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 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 감시
총 계	195	32	13	28	87	25	10	7	3
본 청	172	24	12	28	87	9	10	7	3
기획홍보실	1	1 구청홍보자료수집							
총 무 과	14	8 취사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복무관리 시스템 운영 1	1 영양사	2 청사실외청소			3	3	
교육공동체과	1	1 자원봉사관리							
문화체육과	3	2 체육관관리					1	1	
회계정보과	1	1 전화안내원							
세 무 과	1		1 채납정수						
민원지적과	4	4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도로명주소관리 1							
기후환경과	90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7 환경관리요원				
복지정책과	4					4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과	3	1 장애인편의시설관리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성가족과	3					3 드림스타트			
도시재생과	3						3		3
안전총괄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원녹지과	14	1 민원안내 및 전시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3	3	
건축과	4	1 광고물사무	3 광고물정비 2 위반건축물정비 1						
건설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통과	2	2 주차장시설유지관리							
의회사무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건소	16					16 예방검종증센터 1 통합건강증진사업 15			
복합문화센터	4	4 도서정리							
송촌동	2	2 송촌문화의집 관리							
신탄진동	1	1 신탄문화의집 관리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학습동아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를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대덕구청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대덕구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생활통계 실무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7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4호다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골프 및 사행성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나목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 감사평가실장, 새로운대

덕추진단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실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자치행정과”를 “교육공동체과”로,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환경순찰반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주무실·과”를 “주무 실·단·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실·과”를 “실·단·과”으로, “자치행정과장”을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발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과 실”을 “국과 실·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민원사무명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청소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본 증 소지자의 임무 제2호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예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조물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6급 공무원(담당주사, 주무)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평가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평가실”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구 본청의 보좌·보조기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 및 부서명칭을 조정함(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 본청 : 440명 → 448명 / 8명 증가
 - 기획감사실(29명) → 기획홍보실(22명) / 감사담당 정원 감사평가실로 조정, 홍보기능 인수
 - 감사평가실 : 9명(신설) / 감사·공직윤리·확인평가담당
 - 새로운대덕추진단 : 11명(신설) / 행복대덕, 인구·청년정책추진팀, 민생일자리추진 등 정책추진팀
 - 총무과 : 33명 → 25명 / 재무담당 정원 회계정보과로 조정, 건축과 청사관리담당 정원 일부 흡수
 - 교육공동체과 : 16명(신설) / 교육지원·자치행정·평생학습·공동체담당
 - 문화체육과 : 16명 → 17명 / 문화체육시설담당 신설
 - 회계정보과 : 24명(신설) / 경리·정보화·통신담당
 - 세무과 : 40명 → 39명 / 감원 1명
 - 민원지적과 : 29명(변동없음)
 - 경제과(22명) → 에너지경제과(18명) / 일자리담당 정원 새로운 대덕추진단으로 조정
 - 환경과(21명) → 기후환경과(28명) / 청소위생과의 청소기능 인수에 따른 정원 증가
 - 복지정책과 : 27명 → 28명 / 사회복지과의 주거급여업무 인수에 따른 정원 증가
 - 사회복지과 : 22명 → 20명 / 복지정책과로 주거급여업무 인계 등에 따른 정원 감소
 - 여성가족과 : 18명 → 19명 / 순증 1명
 - 청소위생과(22명) → 위생과(15명) / 청소·재활용담당 정원 기후환경과로 조정
 - 도시재생과 : 17명 → 19명 / 순증 2명
 - 안전총괄과 : 18명 → 12명 / 도시조명담당 정원 건설과로 조정
 - 공원녹지과 : 22명 → 21명 / 공원·조경통합, 감원 1명
 - 건축과 : 25명 → 22명 / 공시시설담당 정원 일부 총무과로 조정
 - 건설과 : 23명 → 25명 / 안전총괄과의 도시조명담당 기능 인수 및 하천·하수 통합으로 인한 정원 조정
 - 교통과 : 30명 → 29명 / 감원 1명
 - 자치행정과 폐지 : 감원 26명
- ▶ 의회사무과 : 15명(변동없음)
- ▶ 보건소 : 45명 → 46명 / 1명 증가 (순증 2명, 감원 의무5급 1명)
- ▶ 평생학습원(33명) → 복합문화센터(31명) / 2명 감소
평생학습기능 교육공동체과 인계에 따른 정원 감소
- ▶ 동 : 144명 → 149명 / 5명 증가
 - 송촌동 : 12명 → 14명 / 2명 증가
 - 중리동 : 12명 → 15명 / 3명 증가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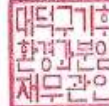




2018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일자 : 2018. 10. 1.(월)
2.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내역 : 127개(등록72개 / 폐기55개)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	공인 등록	대덕구기획홍보실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	공인 등록	대덕구기획홍보실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	공인 등록	대덕구기획홍보실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	공인 등록	대덕구기획홍보실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5	공인등록	대덕구기획홍보실 물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	공인등록	대덕구교육공동체과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	공인등록	대덕구교육공동체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	공인등록	대덕구교육공동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	공인등록	대덕구교육공동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	공인등록	대덕구교육공동체과 물품운용관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	공인등록	대덕구에너지경제과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	공인등록	대덕구에너지경제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3	공인등록	대덕구에너지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4	공인등록	대덕구에너지 경제과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5	공인등록	대덕구에너지 경제과물품운용 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6	공인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발전소 지원금특별회계 수입원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7	공인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발전소 지원금특별회계 지출원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8	공인등록	대덕구기후 환경과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9	공인등록	대덕구기후 환경과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0	공인등록	대덕구기후 환경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1	공인등록	대덕구기후 환경과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2	공인등록	대덕구기후 환경과물품 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23	공인등록	대덕구위생과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4	공인등록	대덕구위생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5	공인등록	대덕구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6	공인등록	대덕구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7	공인등록	대덕구위생과 물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8	공인등록	대덕구감사평가실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29	공인등록	대덕구감사평가실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0	공인등록	대덕구감사평가실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1	공인등록	대덕구감사평가실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32	공인등록	대덕구감사평가실 물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3	공인등록	대덕구새로운대덕 추진단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4	공인등록	대덕구새로운대덕 추진단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5	공인등록	대덕구새로운대덕 추진단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6	공인등록	대덕구새로운대덕 추진단일상경비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7	공인등록	대덕구새로운대덕 추진단물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8	공인등록	대덕구회계정보과 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39	공인등록	대덕구회계정보과 분임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0	공인등록	대덕구회계정보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41	공인등록	대덕구회계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2	공인등록	대덕구회계정보과 물품운용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3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 센터장인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4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 센터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5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 센터물품관리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6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재산관리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7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채권관리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8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부채관리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49	공인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50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지출원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1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2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3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4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5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분임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6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7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58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신탄진도서관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59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안산도서관분임 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0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안산도서관분임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1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안산도서관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2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안산도서관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3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안산도서관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4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분임 정수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5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분임 재무관인	훈민정음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6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일상 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7	공인등록	대덕구북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68	공인 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송촌도서관분임물품 출납원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69	공인 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장인민원사무전용 (신탄진도서관)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0	공인 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장인민원사무전용 (안산도서관)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1	공인 등록	대덕구복합문화센터 장인민원사무전용 (송촌도서관)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2	공인 폐기	대덕구기획감사실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3	공인 폐기	대덕구기획감사실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4	공인 폐기	대덕구기획감사실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5	공인 폐기	대덕구기획감사실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6	공인 폐기	대덕구기획감사실 물품운용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77	공인 폐기	대덕구자치행정 과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8	공인 폐기	대덕구자치행정 과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79	공인 폐기	대덕구자치행정 과분임물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0	공인 폐기	대덕구자치행정 과일상경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1	공인 폐기	대덕구자치행정 과물품운용관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2	공인 폐기	대덕구경제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3	공인 폐기	대덕구경제과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4	공인 폐기	대덕구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 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5	공인 폐기	대덕구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86	공인 폐기	대덕구경제과물품 운용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7	공인 폐기	대덕구환경과분임 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8	공인 폐기	대덕구환경과분임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89	공인 폐기	대덕구환경과분임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0	공인 폐기	대덕구환경과일상 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1	공인 폐기	대덕구환경과물품 운용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2	공인 폐기	대덕구청소위생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3	공인 폐기	대덕구청소위생과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4	공인 폐기	대덕구청소위생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95	공인 폐기	대덕구청소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6	공인 폐기	대덕구청소위생과 물품운용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7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장	한글전서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8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99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0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재산관리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1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2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부채관리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3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04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5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6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7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8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09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분임채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0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1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2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13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분입정서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4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분입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5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6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세입세출외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7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분입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8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분입정서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19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분입재무관인	한글전서체 / 2.0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0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1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세입세출외현 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변경일자	사유
122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 1.8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3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인 민원사무전용(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한글전서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4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인 민원사무전용(안산평 생 학습 도서관)	한글전서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5	공인 폐기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인 민원사무전용(송촌평 생 학습 도서관)	한글전서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6	공인 등록	대 덕 구 복 합 문 화 센 터 장 인 (전 자 이 미 지)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
127	공인 폐기	대 덕 구 평 생 학 습 원 장 인 (전 자 이 미 지)	한글전서체 / 2.1cm 정방형		2018. 10. 1.	조직개편